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1
----------	-----

2018년 9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찬성자 9명)

나. 발의일자 : 2018년 8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라. 상정결과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9월 5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소영 의원)

가. 제안이유

-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 이후 장애인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
- 지속가능한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가 요구되는 바, 체육진흥기금 용도에 장애인체육 사업이나 활동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그 외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첨부)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00년 11월 30일 설치되어 '01년부터 '09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적립하여 '11년부터 운용하고 있음.
- 동 기금은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전국체육대회·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을 통한 장애인체육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이 발의됨.

- 현재 기금을 통한 장애인체육육성 관련 지원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지원은 현행 조례 제4조제6호에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근거로 함.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조치라 판단됨.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u>
<u>3. (생략)</u>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u>4.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u>	<u>5.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u>
<u>5. ~ 6. (생략)</u>	<u>6. ~ 7. (현행 제5호~제6호와 같음)</u>

-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장애인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장애인체육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 개정안은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됨.

한편 기금 사용은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감안하더라도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 위주로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지원액	비고
합계		750,444	
1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32,700	
2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20,000	
3	컬링 이벤트 경기 개최 지원	20,000	
4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000	
5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177,744	

〈붙임2〉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계획(안)

□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계획

○ 제15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2018년)

- 대 회 명: 제15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로 인한 미 개최
- 소요예산(안): 10,000,000원

구분	금액	내용
계	10,000,000원	
차기대회 준비비(2019년)	10,000,000원	'19년 대비 종목별 훈련비

○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2019년)

- 대 회 명: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 개최종목: 총 7개 종목(정식 7)
- 소요예산(안): 170,000,000원

구분	금액	내용
계	170,000,000원	
출전준비물	9,000,000원	대회 출전준비 비용
강화훈련비	65,000,000원	종목별 강화훈련 비용
결·해단식비	6,000,000원	선수단 결·해단식 비용
대회출전비	35,000,000원	선수단 대회 참가 비용
포상비	50,000,000원	선수단 입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
차기대회 준비비(2020년)	5,000,000원	2020년 대비 종목별 훈련비

※ 대회기간, 장소, 규모 미정

○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18년)

- 대 회 명: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대회기간: 2018. 10. 25.(목) ~ 29.(월), 5일간
- 대회장소: 전라북도 일원(주 개최지: 익산시)
- 대회규모: 총 8,000명 예정(선수 5,500명, 임원 및 보호자 2,500명)
- 개최종목: 총 26개 종목(정식 26)
- 참가인원: 총 760명(선수 557, 감독자 81, 임원 및 보호자 122)
- 소요예산(안): 1,120,000,000원

구분	금액	내용
계	1,120,000,000원	
선수선발비	15,000,000원	서울시선수단 선수 선발비
강화훈련비	373,215,000원	종목별 강화훈련 비용
출전준비물	69,326,000원	대회 출전준비 비용
결·해단식비	18,300,000원	선수단 결·해단식 비용
대회출전비	253,759,000원	선수단 대회 참가 비용
포상비	390,400,000원	선수단 입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

○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19년)

- 대 회 명: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대회기간: 2019. 10. 15.(화) ~ 19.(토), 5일간
- 대회장소: 서울특별시 일원
- 대회규모: 총 9,000명 예정(선수 6,000명, 임원 및 보호자 3,000명)
- 개최종목: 총 26개 종목(정식 26)
- 참가인원: 총 850명 예정(선수 600, 감독자 100, 임원 및 보호자 150)
- 소요예산(안): 1,120,000,000원

구분	금액	내용
계	1,120,000,000원	
선수선발비	3,000,000원	서울시선수단 선수 선발비
강화훈련비	444,000,000원	종목별 강화훈련 비용
출전준비물	78,000,000원	대회 출전준비 비용
결·해단식비	11,000,000원	선수단 결·해단식 비용
대회출전비	322,000,000원	선수단 대회 참가 비용
포상비	250,000,000원	선수단 입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1명)
찬 성 자 : 김창원, 최영주, 안광석,
김춘례, 박기재, 노승재,
황규복, 문병훈, 김인호 의원(9명)

1. 제안이유

-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 이후 장애인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
- 지속가능한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가 요구되는 바, 체육진흥 기금 용도에 장애인체육 사업이나 활동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그 외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 나. 예산조치 : 비대상 사유서 첨부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본문 중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를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 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신 설〉</p> <p>3. (생략)</p> <p>4. <u>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u></p> <p>5. ~ 6. (생략)</p>	<p>제4조(기금의 용도)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u>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u></p> <p>6. ~ 7. (현행 제5호~제6호와 같음)</p>